

푸른등대 긴급지원(코로나19) 기부장학금 사업 계획

< '20. 4. 10.(금),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 >

1. 사업 목적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**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북 경산·청도·봉화)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**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**생활비 장학금** 긴급 지원

2. 사업 개요

- 지원대상: 대한민국 국적의 **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**
 - ※ 전공대, 대학원대, 방송통신대, 원격대, 사이버대, 기능대, 평생교육원은 제외
 - 신청자격: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**특별재난지역(대구광역시, 경북 경산시·청도군·봉화군, 소상공인 확인서 주소 기준)의 학자금 지원구간(구. 소득구간) 8구간 이하인 소상공인* 가정**의 대학생**
 - *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**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**(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이어야 하며, 「긴급지원 기부장학금」 **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**(붙임 2. 참조).
 - ** 미혼일 경우 부모,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, 「중소기업(소기업(소상공인))확인서」 상 **대표자가 부모, 배우자 또는 본인**이어야 함.
 - 지원내용: **총 5억 원 (100만 원 × 500명 × '20년 1학기(1개 학기))**
 - ※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및 삼성기부장학금과 **중복 지원 가능**
 - 제출서류: **소상공인확인서*, 가족관계증명서**,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*****
 - * 「중소기업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」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(<http://sminfo.mss.go.kr>)
 - **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
 - *** 신청서 상 **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, 심사 탈락될 수 있음**
-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,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
- ※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**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**한 서류만 인정

□ 선정 방법

- 평가기준: **가계소득(100점) ※ 성적 기준 없음**

【가계소득 배점기준】

지원구간	0~1구간	2구간	3구간	4구간	5구간	6구간	7구간	8구간
점수	100점	90점	80점	70점	60점	50점	40점	30점

- 동점자 처리 기준: **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순 > 다자녀가구 > 저학년 > 연소자(장학금 신청자) > 접수일시 순**
-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
 -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·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지원구간 적용
 -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 확인된 **학자금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**
 - ※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
 - ※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파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마감 이후 최신파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하지 않음
- 신청방법: **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**를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
- 신청기간: '20. 4. 13.(월) 17:00 ~ 4. 27.(월) 18:00까지
-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: '20. 5월 중순 이후

붙임 1. 소상공인확인서 양식 1부.

2. 「긴급지원 기부장학금」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1부.
3. 푸른등대 긴급지원(코로나19)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1부.

붙임 1

소상공인확인서 양식

중소기업 확인서
[소기업(소상공인)]

기업명 : _____
 사업자등록번호 : _____ 법인등록번호 : _____
 대표자명 : _____
 주소 : _____
 주업종 : _____
 유효기간 : _____
 용도 : _____

위 기업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소기업(소상공인)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

발급사실 및 발급최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통해 확인 가능.
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,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.
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기간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.
 *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직전 3개년 사업연도내의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며,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.

※ 소상공인 확인서 상 **대표자명**은 신청자의 **부모, 배우자 또는 본인**이어야 하며, **사업장 소재지(주소)**는 **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북 경산·청도·봉화)**이면서, **유효기간 이내** 서류이어야 함.

붙임2

「푸른등대 긴급지원코로나19 기부장학금」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) 은 신청가능 - 부동산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
